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황우진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3. 7.(목)

「SG증권發 주가폭락사태」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 사상 최대 주가조작 조직, 14명 구속 기소, 42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3. 4. 24. 발생한 이른바 'SG증권發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하여 3년여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매매팀원 등 총 41명을 오늘(3. 7.)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 5.~9. 주가조작 등 범행을 주도한 총책 A 등 15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1명)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늘 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총 56명을 적발·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2명)하였습니다.

●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서, 총책 A를 중심으로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3년여 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임으로써 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24. 2. 14. 총책 기소)은 단일종목으로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이고, 이 사건은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체 부당이득 합계가 사상 최대 규모임

-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 발생 직후 금융위·금감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 10일 만에 총책 A 등을 구속하는 등 단기간에 핵심 주가조작 조직원들을 전원 구속하고, 이후 지속적 수사 끝에 오늘 41명을 추가 기소함으로써 **주가조작 조직을 일망타진**하였고,
- 이들 조직이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주가조작 타겟**으로서 자산가치가 높되 주가조작이 용이한 기업을 발굴하고, 다수 조직원을 동원하여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수법**으로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을 밝혔으며
-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 법률·회계 자문을 하여준 **자문 변호사·회계사**,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주가조작 조직에 **고객 돈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을 적발·기소함으로써 자본 시장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관여한 구조적 비리**까지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검찰은 총책 A 등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해산명령** 청구하여 해산 조치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56명]

- A 등 총 56명

※ [별첨] 피고인의 지위·처분 참조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 '19. 5. ~'23. 4.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주)◇◇◇◇◇ 등 상장기업 8개 종목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 조종하여 합계 7,305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19. 1. ~'23. 4.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CFD계정¹⁾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하여 합계 1,944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20. 4. ~'23. 4. 주가조작·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취득한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은닉 가장 **【범죄수익은닉법위반】**

3

수사 경과

- '23. 4. 24. SG증권發 주가폭락사태 발생
- '23. 5. 1.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 '23. 5. ~9. 주가조작 총책 A 포함 조직원 등 15명 기소(구속 14명)
- '23. 11. 8. A 등 3명 조세포탈 추가 기소
 - (조세포탈 범죄사실) '20. 1. ~'23. 5. 무등록 투자일임업·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을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 은닉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718억원 상당 포탈 **【특가법위반(조세)】**
- '24. 3. 7. 주가조작 조직원 등 41명 불구속 기소
 -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2명), 이사급 임원(6명), 매매팀장(8명), 매매팀원(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1명)

1)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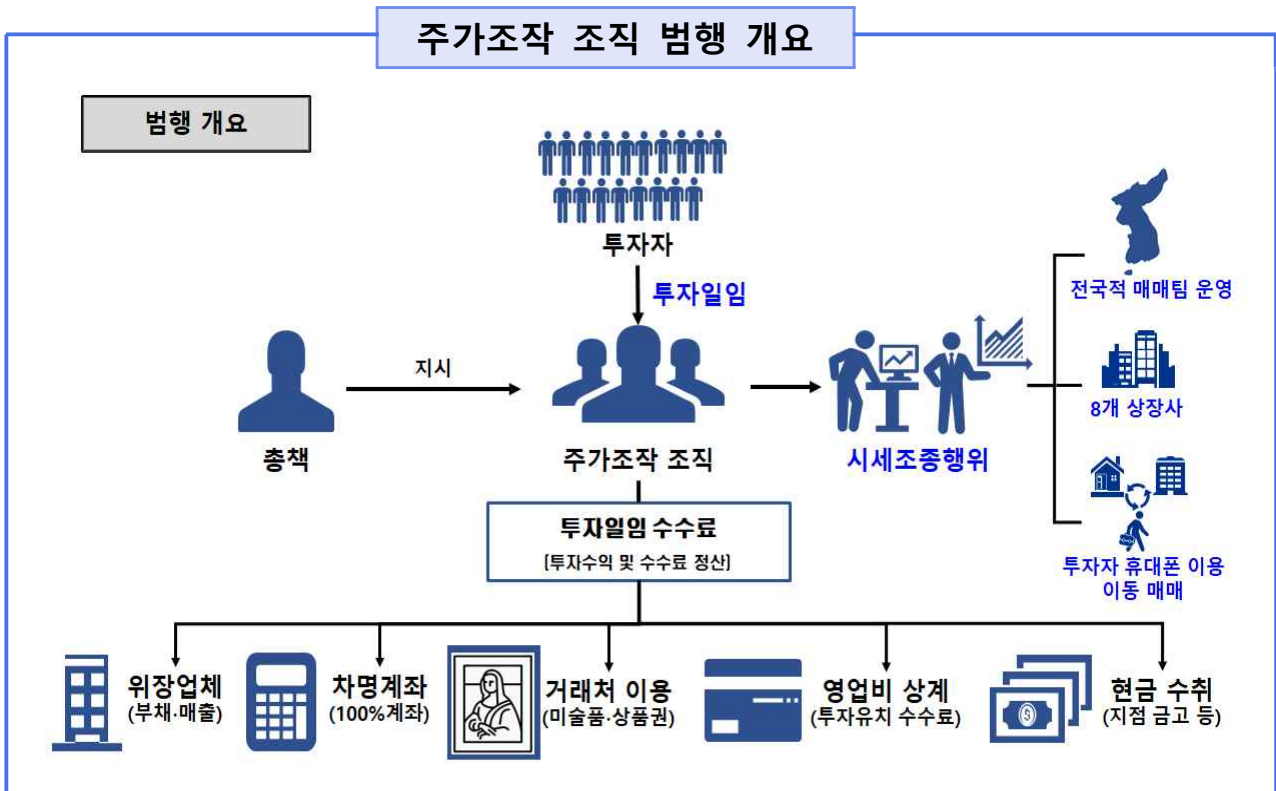
4

수사 결과 및 의의

①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 일망타진

- 이들 주가조작 조직은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 범행을 저지름
 - 약 3년 이상 900명 이상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결과, 위 8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합계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 2019. 2. ~ 2023. 4. 총 8개 종목의 거래규모는 매수액 3조원 상당, 매도액 2조 3,200억원 상당, 주가폭락 사태 직전 주가조작 조직이 보유한 시세조종 대상 종목의 보유액은 1조4,400억원 상당에 이룸(CFD 계정 포함)
- 기능별 전담팀으로 구분된 체계적 조직을 운영하였음
 - ▲ 투자자 모집, 투자 관련 미팅, 투자금 정산 안내 등 투자일임 고객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팀, ▲ 지역별로 고객 명의 CFD 계정 등 주식 계좌 개설, 고객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 특정 종목 주식을 거래하는 매매팀, ▲ 투자수익 및 매출영업비용 등을 정산·관리하는 정산팀, ▲ 투자일임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 수수료를 적법한 매출로 가장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을 관리하는 법인관리팀으로 구성됨
- 특히, 전국망을 구성·운영하였는바, 각 매매팀은 서울의 주요 지역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도 설치되어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십 명에 이르는 매매팀원들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매하였음
- 검찰은 사태 초기 신속한 수사로 총책 등 핵심관계자들을 먼저 구속하고, 이후 끈질긴 수사로 불법 가담자들의 죄책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하였음
 - '23. 4. 24. 주가폭락사태 발생 직후인 '23. 5. 1.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10일 만에 총책 A 등을 구속하고, 단기간에 핵심 관계자 총 14명을 구속하는 등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후에도 주가조작사범 무관용 방침에 따라 A 조직 이사급 임원 (6명), 주범들 지시에 따라 투자자 명의 휴대폰과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담당한 매매팀장(8명), 매매팀원(24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 기업형 주가조작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음



2 새로운 주가조작 타겟에 대한 신종수법의 범행 전모 확인

- 주가조작 조직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주가조작 타겟을 발굴하였는바,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이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음

※ 과거에는 사채 자금을 동원하고, 다수 계좌 및 소수 IP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며, 고점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주가조작 방법을 사용하였고, 주가조작 대상 종목도 대체로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유입을 위해 투기적 사업모델을 갖춘 영세 업체가 대상이었음

● 이른바 ‘이동매매’ 방식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주가조작 조직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대규모 투자금을 모은 다음,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에 이르는 매매팀원들을 동원,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주소지 등으로 이동하여 주식 매매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였음

※ 투자자들은 각자 자기 명의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이를 주가조작 조직에 넘겨 주고, 조직원들(매매팀)은 마치 휴대폰 개설자 개인이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연고지로 이동하여 매매

-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세조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여 장기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지속해왔으나, 합동 수사팀의 철저한 수사로 범행 전모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③ 외부 전문가들의 주가조작 조직 관여 범행 확인

●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기업형 조직을 설계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등 조직의 범행규모 확대에 관여한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거 적발, 엄단하였음

● 주가조작 조직 구성 초기부터 법률·회계 자문을 맡고 조직 임원회의에 참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기 위한 법인 설립·운영 등을 기획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들을 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공범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또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하여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과 주가조작 조직에 증권사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을 적발하여 특경법위반(수재등)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였음


● 이처럼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략한 변호사·회계사, 주가조작 자금 모집 통로가 되어버린 시중은행, 증권사 소속 임직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례임

④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및 주가조작 관련 법인 해산 조치

-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하여, '23. 5.~'23. 7. 총책 A의 차명 재산(법인 명의 부동산, 예금·주식·가상화폐, 차량 리스계약 보증금, 차명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주가조작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하였음
- 또한, '23. 7.~'23. 11. 이들이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한 10개 법인에 대해서도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산 조치함으로써 회사제도를 남용한 법인들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공익을 저해한 법인이 추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였음

5

향후 계획

-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임
 - SG증권發 주가폭락사태 관련 주가폭락 원인 및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별첨】

피고인 지위 · 처분

| | 피고인(나이) | 지위 | 처분 |
|----|---------|---|--|
| 1 | A(41세) | 총책, (주)○○○○○ 前대표(주가조작 총괄) | '23. 5. 26. 구속기소 |
| 2 | B(40세) | (주)○○○○○ 대표(조직 전반 운영) | |
| 3 | C(32세) | (주)□□□□□□ 대표(조직 전반 운영/투자유치) | |
| 4 | D(41세) | (주)○○○○○ 이사(영업팀/투자유치) | '23. 6. 19. 구속기소 |
| 5 | E(35세) | (주)○○○○○ 이사(시세조종/정산·법인관리) | |
| 6 | F(37세) | (주)○○○○○ 이사(시세조종/법인관리) | |
| 7 | G(40세) | (주)△△△△△△ 감사(영업팀/투자유치) | '23. 7. 3. 구속기소 |
| 8 | H(50세) | ◎◎재활의학과 원장(의사 영업 담당) | |
| 9 | I(30세) | 갤러리☆☆☆ 공동대표(수익금 정산·자금세탁) | '23. 7. 24. 구속기소 |
| 10 | J(46세) | (주)○○○○○ 이사(시세조종/법인관리) | '23. 7. 25. 구속기소 |
| 11 | K(37세) | (주)○○○○○ 차장(영업팀/투자유치) | |
| 12 | L(37세) | (주)○○○○○ 팀장(시세조종/법인관리) | |
| 13 | M(50세) | ◆◆◆◆은행 용산금융센터 기업금융팀장 | |
| 14 | N(53세) | ♠♠증권 분당WM센터 부장 | '23. 9. 21. 구속기소 |
| 15 | O(45세) | 갤러리☆☆☆ 공동대표(수익금 정산·자금세탁) | '23. 7. 24. 불구속기소 |
| 16 | P(43세) | (주)○○○○○ 자문 변호사(법률사무소 @@ 소속) | '24. 3. 7. 불구속기소 (자문 변호사 회계사) |
| 17 | Q(41세) | (주)○○○○○ 자문 회계사(회계법인 ## 대표) | |
| 18 | R(39세) | (주)○○○○○ 영업이사 | '24. 3. 7. 불구속기소 (이사급 임원) |
| 19 | S(36세) | (주)○○○○○ 매매팀 총괄 | |
| 20 | T(34세) | (주)○○○○○ 청라팀(조직 총괄 · 관리) | |
| 21 | U(28세) | (주)○○○○○ 청라팀(조직 총괄 · 관리) ※ '23. 7. 17. 구속영장 기각 | |
| 22 | V(43세) | (주)○○○○○ 재무팀장 | |
| 23 | W(42세) | (주)○○○○○ 전략기획팀 이사 | |

| | | | | |
|----|---------|---|-------------------------------|-------------------------------|
| 24 | X(44세) | (주)○○○○○ 매매팀 팀장(광주팀) | '24. 3. 7. 불구속기소 (매매팀장) | |
| 25 | Y(41세) | (주)○○○○○ 매매팀 팀장(대구팀) ※ A 여동생 | | |
| 26 | Z(32세) | (주)○○○○○ 매매팀 팀장(논현팀) | | |
| 27 | a(39세) | (주)○○○○○ 매매팀 팀장(성수팀) | | |
| 28 | b(30세) | (주)○○○○○ 매매팀 팀장(공덕팀) | | |
| 29 | c(32세) | (주)○○○○○ 매매팀 팀장(여의도팀) | | |
| 30 | d(40세) | (주)○○○○○ 매매팀 팀장(울산팀) | | |
| 31 | e(36세) | (주)○○○○○ 매매팀 팀장(선릉/신내팀) | | |
| 32 | f(32세) | (주)○○○○○ 매매팀 직원(공덕팀, 성수팀) | | '24. 3. 7. 불구속기소 (매매팀원) |
| 33 | g(39세) | (주)○○○○○ 매매팀 직원(성수팀, 논현팀) | | |
| 34 | h(38세) | (주)○○○○○ 매매팀 직원(성수팀, 논현팀) | | |
| 35 | i(35세) | (주)○○○○○ 매매팀 직원(성수팀, 여의도팀) | | |
| 36 | j(41세) | (주)○○○○○ 매매팀 직원(성수팀) | | |
| 37 | k(34세) | (주)○○○○○ 매매팀 직원(선릉팀) | | |
| 38 | l(37세) | (주)○○○○○ 매매팀 직원(선릉팀) | | |
| 39 | m(42세) | (주)○○○○○ 매매팀 직원(공덕팀) | | |
| 40 | n(44세) | (주)○○○○○ 매매팀 직원(공덕팀) | | |
| 41 | o(38세) | (주)○○○○○ 매매팀 직원(공덕팀) | | |
| 42 | p(36세) | (주)○○○○○ 매매팀 직원(공덕팀) | | |
| 43 | q(34세) | (주)○○○○○ 매매팀 직원(여의도팀, 성수팀) | | |
| 44 | r(42세) | (주)○○○○○ 매매팀 직원(여의도팀) | | |
| 45 | s(33세) | (주)○○○○○ 매매팀 직원(논현팀, 여의도팀) | | |
| 46 | t(31세) | (주)○○○○○ 매매팀 직원(논현팀) | | |
| 47 | u(41세) | (주)○○○○○ 매매팀 직원(논현팀) | | |
| 48 | v(34세) | (주)○○○○○ 매매팀 직원(신내팀 등) | | |
| 49 | w(38세) | (주)○○○○○ 매매팀 직원(청라팀) ※ E 오빠 | | |
| 50 | x(38세) | (주)○○○○○ 매매팀 직원(성수팀) ※ G 여동생 | | |
| 51 | y(36세) | (주)○○○○○ 매매팀 직원(대구팀) | | |
| 52 | z(31세) | (주)○○○○○ 매매팀 직원(대구팀) | | |
| 53 | AA(46세) | 의사 투자자 매매 담당 직원 | | |
| 54 | BB(38세) | 의사 투자자 매매 담당 직원 | | |
| 55 | CC(39세) | A 운영 법인 직원(제주팀) | | |
| 56 | DD(49세) | ⊗⊗⊗⊗⊗⊗ 점장 ※ A 사촌누나 - 범죄수익은닉법위반으로만 기소 | '24. 3. 7. 불구속기소 | |